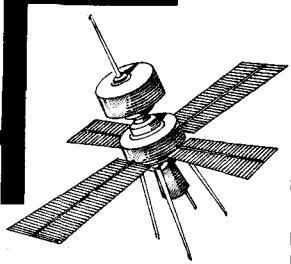


이달의 온테니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노력이 왕성할 때 싱싱한 발전 가능

아직도 냉동시설이 발달하지 못했던 좀 옛날 이야기이다.

막강한 해군력으로 바다를 제패한 영국도 북 해에서 잡은 청어를 런던시장에까지 신선하게 운반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하던 때이다. 운반 도중에 상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은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청어를 런던시장까지 가져와 큰 돈을 벌고자 많은 사람들의 선망 대상이 되었고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조르게 되었다.

비법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청어를 실은 배에 청어를 잡아먹는 바다 메기를 3마리쯤 함께 넣어 둔다는 것이다.

그러면 청어들이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긴장 속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죽지 않고 활력을 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메기가 잡아먹는 청어란 그저 몇 마리 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청어 몇 마리가 죽는다는 사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몇 마리 살리려다 모든 청어가 다죽는 손실을 보게 된다.

청어뿐이 아니라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긴장 속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왕성할 때 싱싱한 발전이 있게 된다.

배합사료도 가격이 자율화 되면서 품질도 좋았지만 가격도 현실화 되었는데 앞으로 구매제도만 개방되면 배합사료 산업은 더욱 싱싱하고 활력이 넘치리라고 확신한다. 시장기능을 통한 경쟁을 통해서 기술혁신을 이루고 기업이 갖은 모든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사회가 썩은 청어처럼 활력이 없어 중공도 이제는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이고 흐르는 물은 스스로 정화능력을 갖는다.

우리가 흔히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잘살기를 원하며 양계산업도 실패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그저 양계를 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퀴터제도 생각하고 신규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근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막아야 하는 등 제반 노력을 기울인다. 물론 메기가 청어를 너무 많이 잡아 먹을 정도로 많으면 문제가 있지만 서너 마



리의 메기는 청어가 먹지 않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활력이 넘치는 양계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피나는 경쟁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작은 고기가 쉽게 잡혀먹힐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몸이 적으면 활동이 민첩해서 더 날세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군살이 많이 끼면 활동이 둔해져 잡혀 먹히기가 쉬워진다.

머리가 굳어져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청어는 메기 앞으로 나가다가 먼저 잡혀 먹힐 수도 있다.

청어를 실은 배에 메기를 넣는 것이 잔인한 행동 같으나 썩지않게 하기 위해서 한두마리는 넣을 수 밖에 없는가 보다.

정부도 이제는 과거처럼 기업을 온실속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긴장속에서 활력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경쟁을 가중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외국들이 매일 몇 백개의 회사가 도산하고 새로 몇백개가 창업을 하는 가운데 산업이 발전하는 것 같이 우리도 제조업에 한해서 창업이 쉽도록 신고제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허가제 등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없애 나간다고 한다.

전체적인 정책의 흐름속에서 축산업이 활력을 찾는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내년(87)부터는 배합사료의 수입 개방이 논의되어 청어를 잡아먹는 더 강력한 메기를 사료업계에 풀어놓을 모양인데 금년도 배합사료 수급 정책은 경쟁도 하지말고 물량도 지난해 보다 줄인다고 하니 일반 양축가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봉황의 높은 뜻을 축새들이 어찌 이해할 수 있느냐고 한다면 할말은 없다.

월간 양계가 창간 200호를 맞이하여 그간 얼마나 긴장 속에서 썩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는지를 반성해 보면서 그간 메기의 역할을 하여주신 편집위원과 잘못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독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아직 썩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썩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썩고 있다는 뜻은 아닌지? 앞으로도 더욱 긴장 속에서 월간양계를 만들어 가도록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5 월 위기설

닭고기 값이 오랫만에 kg당 1천원을 넘어섰다. 더군다나 이제 입식하는 병아리들은 초복 때 출

하하게 되므로 복병아리라고 하여 병아리를 살 수 없어 아우성들이라고 한다.

이러다가는 또 한차례 복때에도 (伏) 닭값이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벌써부터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란값도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이 분분하였으나 불행하게도 IB(닭전염성 기관지염)라는 불청객으로 때아니게 계란값이 회복되고 있어 어리둥절할 뿐이다. 계란의 경우 성수기에 하락하고 비수기에 회복되는 이번이 오기는 81년 ILT 때에 이어 이번 IB로 두번째 경험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최근에 초생추 입식을 자극하여 산란계 수수를 증가하는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산란계의 경우에 완만하지만 2년반 정도의 주기로 경기가 변동되어 비교적 안정되어 왔는데 이번 계란값 회복이 이러한 리듬을 깨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수 없이 지난 불황을 잊어버리고 가격이 상승되면 곧바로 과잉 생산으로 이어진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2차대전 중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자료를 수집 보관한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은 정부에서 세운것과 당시 독일에 있었던 유대인 등 민간인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전시된 박물관이 나란히 있는데 물론 민간박물관이 규모면에서 훨씬 크고 자료도 풍부하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박물관에 전시된 자료를 다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정도로 비참한 장면들이 있다.

박물관을 나오는 출구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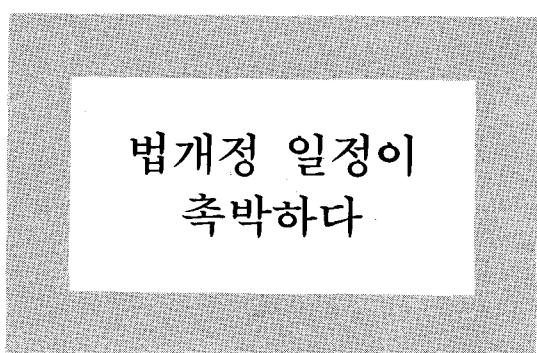
“망각은 또다시 멸망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에 이른다.”

우리도 양계산업의 불황일 때의 참혹함을 사진 기록들에 담아서 모든 양계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시한다면 과잉생산으로 인한 불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본다.



올해 들어 육계나 채란업이 너무 오랜기간 불황이 계속되어 이러한 생각도 해본다.

양돈의 경우에 79년의 불황이 예상된다고 홍보하여 79년의 양돈불황을 기억하게 하여 성공을 하고 있지 않은가?



축산업에 대하여는 그간 정부에서 상당한 세제상 지원을 해왔는데 이러한 세제상 지원이 축산업 발전에 미친 공과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남아있는 축산업에 대한 조세 특례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농가부업 축산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부업 축산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데 얼마전 협회에서는 이의 상향조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최근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면세가 정부의 농어촌 대책에 따른 정책의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부업축산의 범위
(단위: 두, 수)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20	20	150	150	150	3,000	3,000	3,000

* 성축기준,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근거. 소득세법 제5조 3호 (4) 령6조의 2 규칙 2조의 2.

○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감면 규제법 37조 93조에 의해서 86년도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세범위

사 업 별	사육성축두수	면세범위
한우·육용우 사육사업	20두 이상	두당 1,150m ²
유우 사육사업	20두 이상	두당 2,300m ²
양·사슴 사육사업	200두 이상	두당 230m ²
돼지 사육사업	100두 이상	두당 13m ²
토끼(친칠라 및 펭크 포함) 사육사업	500수 이상	수당 3m ²
가금 사육사업종계장에 설치된 부화장 포함)	1,000수 이상	수당 3m ²

- 면세범위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신목장사업개시요. 단, 구목장 양도전에 신목장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신목장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구목장 양도요.
- 상기 요건 구비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신목장 목축명세서 첨부요.

사업분까지 축산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년도와 그 다음 5년간 20%의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되어있다.

이제는 자동적으로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 소득세법 제6조 2항 3호 시행령 19조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비과세 하도록 되어있다.

이문제에 대하여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시에 어느 형태로든 개정이 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법이 완전히 폐지되든가 아니면 신규 투자분에 한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세를 할 경우에 축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다.

대부분이 그동안 도시근교에서 축산을 하여왔기 때문에 도시의 팽창과 함께 도시에서 떨어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어 자칫하면 낙농 육우에서는 정상적인 초지조성을 하여 초지 축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계속 배합사료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돼지나 닭의 경우도 도시근교에서 불가피 이전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양도소득세로 이전비용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축산업은 퇴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외에 초지상속공제 부가가치세 문제(배합사료) 축산업자에 대한 사업소세 비과세 문제 등 발전개선시켜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대부분의 조세감면 규정이 금년말 까지의 사업분으로 한정되어 대폭적인 세법의 개정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업계도 앞으로의 시대에 상응하는 세법으로 개정하기 위하여는 정기국회 이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자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재무부 등 관계요소와 협의를 마쳐야 할 것이다. 할일은 많은데 시간은 촉박하다. ■